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19. 11. 15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복합도시 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강태석, 사무관 김봉길, 주무관 배상한</li> <li>• ☎ (044) 201-3686, 3693</li> </ul>
보 도 일 시		2019년 11월 1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17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.

- 18일부터 「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
-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용 시 직접사용으로 인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「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11월 18일(월)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.
-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, 우리 부는 지난 10월 박선호 제1차관이 주재한 '제6회 규제혁신심의회\*'에 이를 상정하였다.

\* (규제혁신심의회)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'18년부터 운영 중으로, 1차관을 위원장으로 경제단체 및 법률·규제·적극행정 민간전문가(10명) 등으로 구성

- 현행 『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』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, 업무용지,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%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  - 『국가균형발전특별법』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<sup>①</sup>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%<sup>②</sup>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

있도록 하고 있다.

- 개정안은 ① 현행 『국가균형발전특별법』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, 『공공기관운영법』에 따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.
  - 또한, ②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%에서 100%로 확대하도록 했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최근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여 준공식을 한 원주, ‘12년에 준공한 충주기업도시에서는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, 태안과 영암·해남 기업도시도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” 면서,
-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,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되어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7일까지(40일간)이고 관계부처 협의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-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법령정보/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27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\* 의견제출처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
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/ ☎ 044-201-3686, FAX 044-201-5565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 
복합도시정책과 김봉길 사무관(☎ 044-201-368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